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

지방계약원가협회 회원명단

2021년 7월 1일 현재

지방계약원가협회 회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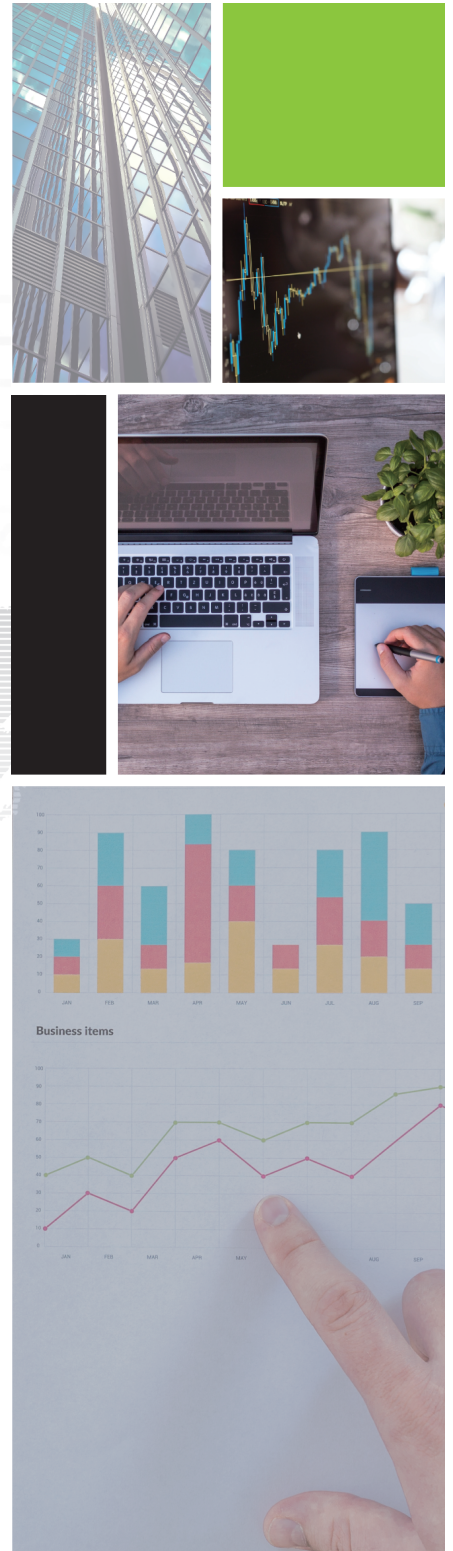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용역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자격요건 심사**가 면제됩니다.

회원사의 임직원은 원가계산업무의 이론과 실무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전문인력과 원가계산실무 자격증인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용역 입찰 시에도 본 협회 회원사 중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원가협회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상에 규정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회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제도

원가계산의 중요성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가격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이며 또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등 다른 가격으로 대체 불가능한 가격이므로 공공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에 있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원가계산제도의 도입

- 원가계산제도는 2006. 1. 1. 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원가계산이란

- 각종 계약을 할 때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원가계산이라고 한다. 즉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해 설계서 등에 따라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 규칙]**에 의거 처리하고, 계약업무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 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원가계산은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계산된 원가대로 공정 등이 관리되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것을 원가관리라고 하며, 이러한 일들은 주로 원가분석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 된다.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연구소,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 10인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있을 것, 기본재산(최근 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연구소는 5천만원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10인 이상 상시고용하고 있어야 할 인원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5년 이상인 자 2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 소지자 2인임.

법령상 원가계산관련 규정 내용

- 각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이 신규 개발품이거나 특수 규격품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각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음.
-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원가계산 용역업무의 종류

제조원가계산

- ▶ 제품·공정별 제조원가계산 ▶ 음식료품 제조·구매 원가계산
- ▶ 섬유·의복·가죽제품 제조 ▶ 나무·나무제품 제조·구매 원가계산
- ▶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 제조·구매 원가계산
- ▶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 제조·구매 원가계산
- ▶ 수입물품 원가계산 ▶ 방산물자 원가계산 ▶ 장비 및 수리원가계산

원가검토업무

- ▶ 설계서 검토 ▶ 과업지시서 검토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
- ▶ 민자 유치사업과 관련된 원가의 적정성 검토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 ▶ 엔지니어링 사업 ▶ 측량용역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 건설기술용역 ▶ 전력기술용역
- ▶ 건설공사 감리 용역 ▶ 공공디자인 용역 ▶ 수입원가 ▶ 행사원가

기타 계약내역의 변경

- ▶ 설계변경, 물가 변동 외에 계약내용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비용 지원 사업에 따른 원가계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근거

기타 원가계산업무

- ▶ 공공요금 및 요율산정 ▶ 민간위탁비용 산정(청소, 경비, 쓰레기 등)
- ▶ 운송비용 산정 ▶ 건물임대료 산정 ▶ 시설물 유지관리 원가계산
- ▶ 시장조사 용역 등

학술연구용역

- ▶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 ▶ 민간위탁 관련 연구
- ▶ 공공요금 및 수수료 산정 연구 ▶ 경영전략 및 경영계획 수립 연구
- ▶ 고객만족도 및 수요예측 조사 ▶ 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등

공사원가계산

- ▶ 건축/토목(조경)/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
- ▶ 전기/기계/설비(소방)/통신 등의 공사비 산정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 ▶ 학술연구용역 대가 설정을 위한 원가계산

건설 신기술 원가계산

- ▶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 신기술의 지정제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물가변동의 산출기준 ▶ 품목 조정률에 의한 방법
- ▶ 지수 조정률에 의한 방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 신기술·신공법 등으로 공사비의 절감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 부담금 산정업무

- ▶ 개발 부담금 관련비용 산정 ▶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 검토

사후(정산)원가계산

-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의한 사후원가계산
- ▶ 개산계약에 의한 정산원가계산

기타

- ▶ 건설공사 수량 및 사업비 검증 ▶ 사용료, 점용료 산정
- ▶ 자금집행 적정성 분석 ▶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분석
- ▶ 자산가치 보상에 따른 이설비용 및 잔존가치 산정
- ▶ 소송(중재) 관련 감정 ▶ 연구개발비, 보조금, 지원금 정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과 관련한 공사원가계산서

-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제2010-16호)에 근거

NO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홈 페이지
1	(재)21세기지방자치정책연구원	최학수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 805호(반석동, 뉴타운프라자)	042-823-5544	www.21capri.com
2	(재)동양경제연구원	최홍석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 본관동 301호(대저2동, 부산티플렉스)	051-294-2277	www.deri.or.kr
3	(사)동양경제정보연구소	김승규	서울 중랑구 동일로 932, 3층 306호(묵동, 자이프라자 2단지)	02-3446-1800	www.sderi.or.kr
4	(재)한국산업전략연구원	김성규	경기 광주시 통미로 52번길 2(경안동)	031-765-2800	www.inst.or.kr
5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노근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42, 3층(서초동, 갑목빌딩)	02-3473-4666	www.kidif.re.kr
6	(사)한국경영분석연구원	김민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9길 5, 401호(역삼동, 동림빌딩)	02-558-2045	www.kiba.re.kr
7	(사)한국경제정책연구소	이직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42, 5층(대치동, 덕유빌딩)	02-508-5561	www.kiep21.or.kr
8	(사)한국기업경영연구소	최정균	대전 서구 갈마로 107, 3층(갈마동, 석봉빌딩)	042-537-7799	www.nicekorea.org
9	(재)한국산업발전연구원	엄봉석	강원 강릉시 성덕포남로188번길 10(포남동, 3층)	033-652-4488	www.kidi4488.or.kr
10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권형남	경기 광명시 하안로 60, 이동 418-1호 광명테크노파크(소하동)	02-584-1091	www.ktei.or.kr
11	(사)한국통계조사연구소	신동엽	서울 강남구 개포로 224, 5층(개포동, 준빌딩)	02-578-2556	www.kossi.or.kr
12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소	이건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61번길 79(장항동, 하이베라스 803호)	031-932-6900	www.esi21c.or.kr
13	(재)21세기경제연구소	조성인	서울 강남구 논현로128길 26(논현동, 중앙빌딩 4층)	1544-9421	www.21c.or.kr
14	(사)21세기국민경제연구소	배주홍	서울 중구 동호로8길 13, 502호(신당동, 유현빌딩)	02-533-2008	
15	(사)건설원가연구원	박양호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1207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02-422-8050	www.anycost.or.kr
16	(사)경남경영경제연구원	오장석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61, 405(용호동, 경남빌딩)	055-282-9022	www.kmei.or.kr
17	(사)경일사회경영연구원	송성광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28번길 31, 201호, 405호(인계동)	031-222-6088	www.kismi.or.kr
18	(사)대한경제연구원	선종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705호(여의도동, 한국스카우트연맹)	02-780-5599	www.kei21.or.kr
19	(재)우리정책연구원	송재준	전남 나주시 빚가람로 685, 805호(빚가람동, 비전타워)	061-334-3990	www.wori.co.kr
20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	최현호	경북 경산시 성암로 11(옥산동, 2층)	053-381-5523	www.iedi.or.kr
21	(사)중앙경제연구원	오세철	서울 영등포구 63로 32, 718호(여의도동, 콤비빌딩)	02-362-6244	www.joong-ang.or.kr
22	(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	이길수	부산 동구 중앙대로 263, 1705호(초량동, 국제오피스텔)	051-461-0331	www.kied.or.kr
23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	이진구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1로 30, 502호(대흥동, 그루타워)	053-766-0038	www.kepi.or.kr
24	(재)한국경제연구소	송순애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134-12, 2층	062-573-3500	www.한국경제연구소.kr
25	(사)한국경제정보연구원	허찬섭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1510호(구로동, 제이엔케이디지털타워)	02-6124-6200	www.keii.or.kr
26	(재)한국경제정책연구원	윤정수	부산 남구 자성로 152, 1722호(문현동, 한일오피스텔)	051-631-8101	www.kiep.or.kr
27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김경성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903호(상대원동, sk테크노파크 메가센터)	031-776-3350	www.keri.or.kr
28	(재)한국국민경제연구원	김창녕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32, 202호(용답동, 금풍빌딩)	02-571-0148	
29	(사)한국기업연구원	이승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7, 205호(청담동, 대신빌딩)	02-540-0837	www.kbi.ne.kr
30	(사)한국기업정보연구원	노선애	대전 유성구 대학로76번안길 43(궁동, 남양빌딩 3층)	042-823-8611	www.kifa.or.kr
31	(사)한국기업평가원	김남숙	서울 강남구 논현로30길 28, 2층(도곡동, 서부빌딩)	02-508-7002	www.kiv.or.kr
32	(사)한국물가정보	노영현	경기 파주시 회동길 354(서패동)	1577-7200	www.kpi.or.kr
33	(사)한국물가협회	성광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가산동, IT캐슬1동13층)	02-799-0810	www.kprc.or.kr
34	(사)도우경제정책연구원	손찬호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613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02-6953-4949	dowoo.or.kr
35	(재)한국산업경제개발원	이상범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16, 203동 501,502,503호(평리동, 평리롯데캐슬)	053-652-4488	www.kiedi.or.kr



NO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홈 페이지
36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	장현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6, 9층(봉천동, 삼호빌딩)	02-888-8001	www.kiie.re.kr
37	(사)한국산업분석연구소	이현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58, 402호, 403호(여의도동, 삼도빌딩)	02-6295-4665	
38	(재)한국산업평가연구원	이중화	대구 동구 화랑로 201(효목동, 3층)	053-958-0950	www.kine.or.kr
39	한국생산성본부	안완기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적선동)	02-724-1250	www.kpc.or.kr
40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김학모	제주 제주시 과원북4길 89 (연동, 주흥빌딩4층)	064-742-0135	www.rge.or.kr
41	(재)한국재정경제연구원	박해근	서울 광진구 능동로 259, 5층(군자동, 성운빌딩)	02-455-5405	www.kife.or.kr
42	(사)한양경제연구원	유남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로 16, 501호, 502호(창곡동, 경운프라자)	031-759-4555	www.iheri.com
43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정영균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4층 401호(관양동, 평촌아크로타워)	031-478-9900	www.hiei.or.kr
44	(재)현대산업정보연구원	최진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8길 20(성산동)	02-3143-0041	www.hiii28.or.kr
45	(사)지역정보연구원	임석민	강원 원주시 남원로 528(단구동)	033-765-2095	www.gli.or.kr
46	(재)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	이영만	대구 수성구 지범로 45-2 (지산동)	053-767-3111	www.kiiep.or.kr
47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김영식	강원 원주시 시청로 22, 301호(무실동, 리젠트프라자)	033-742-8830	www.원가분석.kr
48	(사)공간경제연구원	강성길	강원 강릉시 교동광장로 135, 401호(교동, 4층)	033-645-3788	
49	(사)우리경제연구원	송성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6, 201호(궁내동, 만조빌딩)	031-8016-0367	www.woo-ri.or.kr
50	(재)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경남 김해시 활천로15번길 25, 2층(부원동)	055-366-0336	
51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조형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1201-3호 (비산동, 안양건설타워)	031-347-8788	www.kkii.or.kr
52	정동회계법인(총괄 강명섭)	이윤생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1 (논현동, 씨에스에프빌딩 7층)	02-543-9697	www.jdac.co.kr
53	(사)중소기업경영전략연구원	최연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72, 1509호(장항동, 대우메종리브)	031-911-7304	www.smbi.or.kr
54	(사)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	황창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8, 505호(여의도동, 오성빌딩)	02-761-9060	www.kileb.or.kr
55	(사)한국사회경제연구원	정민영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13, 타워동 2911호(영덕동, 흥덕IT밸리)	031-225-2548	www.ksei.kr
56	(사)정보화가치연구원	황영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길 36, 302호(서초동, 성진빌딩)	02-6180-2100	www.infv.or.kr
57	(재)한국경제행정연구원	이인영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21, 3층(복정동, 우신빌딩)	031-721-8810	www.keai.re.kr
58	(재)한국조달연구원	백명기	서울 강남구 언주로 319, 5,6층 조우회관(역삼동)	02-796-8234	www.kip.re.kr
59	(재)나라정책개발원	김선영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27번길 2-1, 3층(팔용동)	055-253-0611	npdi.re.kr
60	(사)동남자치정책연구원	염영아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로15번길 56(가주동)	055-541-0033	www.dapri.kr
61	(사)건설경제연구원	임철희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13, 타워동 1201호(영덕동, 흥덕IT밸리)	1833-9665	www.iceri.or.kr
62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산경연구소)	이경수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1층(대동)	053-215-5409	
63	(재)한국산업평가원	김재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116, 3층 좌측 316호(성정동, 성정빌딩)	042-385-8500	www.keii.kr
64	(사)국가산업개발원	김석구	세종 조치원읍 새내로63, 4층	044-715-7300	www.enidi.or.kr
65	(사)현대경제정보연구원	나범규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제비-1703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	031-750-0337	www.heiri.co.kr
66	(사)경영정보연구원	양준영	서울 서초구 서운로 160, 302호(서초동, 팔레스오피스텔)	02-585-8600	www.bmi.re.kr
67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02-2112-0100	www.kpmg.com/kr
68	(사)한가람경제연구소	방정현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79, 3층	062-603-0555	
69	대현회계법인(총괄 박재민)	송재현, 이광준	서울 광진구 능동로 7, 6층 (자양동, 한강파크빌딩)	02-557-8970	www.daehyuncpa.co.kr
70	(재)건설산업정보연구원	김철상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 505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8차)	02-525-7852	www.cisi.or.kr

NO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홈 페이지
71	(재)지역경제분석연구원	김민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35, 529(상남동, 새롬아이포빌)	055-264-1379	
72	(사)한국방위사업연구원	장복철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439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02-755-1977	www.dapi.re.kr
73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김효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14, 504(여의도동, 한국스카웃연맹회관)	02-785-6070	www.koris.org
74	(재)미래경영연구원	임동철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27, 814호(인창동, 세신종합상가)	031-564-0018	mmi.re.kr
75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신건철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회기동, 경희대학교)	02-967-5155	www.khuiir.ac.kr
76	(사)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	한병우	서울 서초구 효령로68길 92, 벨빌딩 3층(서초동)	02-3474-8962	www.ekic.or.kr
77	대구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회계연구소)	변태영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1층	053-850-3468	iacf.cu.ac.kr
78	(사)한국행정발전연구원	김동오	전남 나주시 울정길 12-14(대호동)	062-385-0113	www.kadi.re.kr
79	(사)한국산업분석연구원	서승권	전남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293	062-416-1800	www.kiai.or.kr
81	(사)세디경영연구소	유충식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7층 702호(관양동, 안양금융센터 A.F.C)	031-388-5252	www.sedi.or.kr
82	(사)정보사회개발연구원	박현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10, 케이티 서수원지사 2층(구운동)	031-257-0905	www.isdi.or.kr
83	(사)한국경제혁신연구원	박기동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701호(재송동, 벅산이-센텀클래스원)	051-782-0751	www.kinei.or.kr
84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86길 17(대치동, 육인빌딩)	02-3453-5984	bakertilly-woori.co.kr
85	(사)해광산업경제연구소	명동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241, 2층 (우아동2가)	063-242-5908	
86	(사)산업경제정보연구원	박명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78, 3층 302호(성산동, 진영2빌딩)	02-6951-1213	www.ieii.co.kr
87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경영연구소)	고중혁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흑석동) 중앙대학교 310관 1137호	02-821-6790	www.caubri.or.kr
88	(사)한양경제경영연구소	김수영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204호(사근동,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02-2292-4688	www.i-heri.com
89	(사)한국건설관리연구원	이원식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30, 1510호 (성수동1가, 서울숲IT캐슬)	02-6959-0605	www.kicm.or.kr
90	(재)녹색산업경영연구원	한태일	서울 송파구 중대로 188, 404호(가락동)	02-402-8980	www.green-cost.or.kr
91	(재)경제정책연구원	김도수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0길 3, 401호(서초동, 원진빌딩)	02-598-3310	www.fepi.or.kr
92	(재)청우산업발전연구원	민유기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61, 204호(군자동, 광진동양파라곤)	02-6951-1591	
93	(재)한국자치행정원	김창식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성7길 3, 302호(두정동,레몬타워)	041-622-3735	
94	(사)아태행정산업연구원	성낙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 D동 504호(아탑동, 분당테크노파크)	031-707-1505	www.api.re.kr
95	(사)지식나눔경제연구원	심진수	전남 나주시 상야3길 8, 227호(빛가람동, 중흥s클래스 메가티움 2차)	062-603-4000	www.ksei4000.co.kr
96	(사)전북행정발전연구원	김희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13, 301호 (효자동2가)	062-221-0117	www.jadi.re.kr
97	서현회계법인	강성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서관3층 (대치동,포스코센터)	02-3011-1100	shacc.kr
98	인덕회계법인	김종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2층	02-782-9930	www.indukacc.com
99	(사)한국지식오름연구원	구민수,김정희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503호(우동, 센텀그린타워)	051-717-3853	kir.re.kr
100	(사)한국산업융합연구원	정기창	서울 강진구 구의강변로 22, 501호(구의동,아원빌딩)	02-6925-4813	kicc.re.kr
101	(사)동양경제연구소	위용범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1길 126, 제1호	062-961-8515	dyer.or.kr
102	(재)한국도시경제연구원	김유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6, 402호(만성동)	063-714-3100	
103	태양회계법인	오철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4층(신월동,창원상공회의소)	055-264-6655	
104	(사)공공행정자치연구원	이성정	세종 나성북1로 12, 8층 802호(나성동)	044-862-9370	
105	(사)아주경제연구원	김영중	전남 화순군 능주면 죽수길28, 1층(관영리)	062-961-3349	
106	(사)지역경제정책연구원	김선영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39번길 32(팔용동,2층)	055-263-5523	www.repi.or.kr
107	(사)한국방위사업정보원	김광우	서울 서초구 마방로 12, 5층(양재동,신양빌딩)	02-2058-0950	

원가계산관련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 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밖의 다른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용역기관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①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②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 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③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④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 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 시 "가"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본 협회 등)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원가계산관련 국가계약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신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

3.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 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제2호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원을 말한다.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5년 이상인 자 2인
 2.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4.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2조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본 협회 등)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본 협회 등)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